

성적 괴롭힘

팩트 시트



민사 구제

- 각 고용주 또는 개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고통에 대한 피해
- 고용 또는 복직
- 체불 임금 또는 승진
- 고용주의 정책 또는 관행 변경

모든 고용주는 괴롭힘을 방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시정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1. 본 문서의 사본 또는 정부 법령 12950을 준수하는 대체 문서를 배포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수량에 관계없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 법은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합니다(California Law Prohibits Workplace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라고 적힌 DFEH 고용주용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3. 2 CCR 11023에 따른 괴롭힘, 차별 및 보복 방지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FEHA 하의 모든 보호 그룹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직원이 접촉하게 되는 감독관 및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및 체삼자도 괴롭힘에 연루되어서는 안 됨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최대한 기밀 보장 적시 응답 자격을 철저히 보호하는 불만 처리 절차 및 시의적절한 조치 및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시의적절한 조치 및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시의적절한 절차 종료 후 보장하는 불만 제기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속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 처리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정된 회사 담당자와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절차 규정 및/또는 불만 제기 하라이 및/또는 음부스매 전근 및/또는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DFEH 및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United Stat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대한 연락처 정보.
- 회사가 내부적으로 불만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을 인사 관리자와

- 같은 회사의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감독관을 교육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필수적으로 성적 괴롭힘 방지를 교육 주제로 포함해 합니다(2 CCR 11024 참조).
 - 고용주가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고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수단을 통해 괴롭힘, 차별, 보복 금지 정책을 배포해야 합니다.
 - 정책을 인쇄하고 직원에게 그 사본 및 직원이 서명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함께 제공.
 - 확인서 양식을 함께 첨부하여, 정책을 이메일로 발송.
 - 모든 직원이 정책을 수신하고 이를 읽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회사 인트라넷에 정책의 최신 버전을 게시.
 - 채용 시 및/또는 신규 채용 오리엔테이션 동안 정책에 대해 논의.
 - 직원이 정책을 수신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법을 사용.
 5. 어떠한 시설이나 기관이든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 노동 인력의 10% 이상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고용주는 괴롭힘, 차별 및 보복 금지 정책을 10% 이상의 직원이 구사하는 모든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6.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5인 이상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모든 비관리자 직원에게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모든 관리자 직원에게는 2시간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을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2019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부 법령 12950.1 및 2 CCR 1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만 제기
공정 고용 주택국
 dfeh.ca.gov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